

영국 사례 1

**사진촬영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영국 PCC는 아이슬 위스의 파스칼 퀴글리가 「주우 매거진」 5월 12~18일자 『아빠와 똑같이』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주우 매거진 측이 문제의 기사에 그의 10살 난 딸이 FA Cup 경기에서 첼시가 리버풀에 패하자 모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부모의 동의 없이 얼굴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사용하는 등 PCC 윤리강령의 여섯 번째 조항(아동 보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우 매거진 측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아동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기사의 경우 첫째, 불만신청인과 그의 딸은 축구 경기장이라는 공공장소에 있었고, 둘째, 사진의 주제는 딸과 불만신청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모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의 행동이 정당하게 비난 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아동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PCC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진기자들과 TV 카메라 그리고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찍힌 아동의 사진이 아동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PCC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재하는 모든 아동의 사진이 모두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사진의 주제, 사진이 보도된 배경과 방식, 사진이 찍힌 방법 등을 모두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PCC는 문제의 사진이 군중 속의 순수한 어린이의 사진

과 대비되는 점은 소녀의 반사회적 제스처가 그의 아버지(불만신청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불만신청인은 나치식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었다.

PCC는 윤리강령을 보면 '16세 이하의 아동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PCC는 보호자인 불만신청인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진이 찍힐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만신청인은 매우 큰 스포츠 행사에 참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만신청인과 그의 딸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신문기자에게 사진을 찍히거나 심지어는 TV에도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언론사 측에서는 불만신청인이 그의 딸과 함께 문제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취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간주할 수 있고 이는 곧 불만신청인이 사진 촬영

에 동의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PCC는 밝혔다. □

챙기려는 탐욕스러운 기회주의자인 불만신청인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사 측은 불만신청인이 게임기를 경매에 내놓고 높은 이득을 보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문사 측은 이러한 불만신청인의 태도를 보도하는 것과 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충분히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 판단했고 불만신청인이 사진기자를 집안으로 초대해서 그의 어린 아들을 촬영할 수 있게 했으므로 신문사는 아들의 사진 대신 불만신청인의 사진을 사용해도 불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영국사례 2

**대중의 정당한 관심을 넘어서는 내용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

영국 PCC는 웨스트 브롬위치의 크리스토퍼 본이 「선데이 머큐리」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불만신청인은 지난 2005년 12월 14일에 『XBox 불행에 돈을 지불한 아빠』라는 제목으로 선데이 머큐리 지에 실린 기사가 정확하지 않고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해 PCC 윤리강령의 첫 번째 조항(정확성)을 위반했으며 또한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기 때문에 윤리강령의 세 번째 조항(사생활)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CC는 윤리강령의 세 번째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첫 번째 조항에 관한 불만신청인의 불만은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eBay에서 경매로 팔아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기인 'XBox 360' 30대를 샀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기

사가 자신을 “영국에서 가장 탐욕스런 사람”, “오늘날의 스크루지”, “파렴치한 사람” 등으로 묘사하면서 게임기를 팔아 챙길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윤리강령의 첫 번째 조항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불만신청인은 신문사의 인터뷰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단독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아들이 게임기와 함께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동의했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은 그러나, 기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던 자신의 사진이 촬영을 동의했던 아들의 사진 대신 기사에 실렸다고 주장하면서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및 게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 측은 기사의 핵심 내용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XBox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을 예상, 이를 이용해 상당한 이득을

PCC는 기사가 불만신청인을 “영국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문사 측의 강경한 견해였지만 충분히 보도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PCC는 지금까지 독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아서 판단할 수 있었고 그러한 표현이 사건의 팩트만을 관찰한 것이 아님을 기사가 비판하는 방식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기를 팔아 버는 금액의 액수에 대한 기사 내용 역시 크게 잘못된 점은 없었다고 PCC는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PCC는 문제의 기사가 윤리강령의 첫 번째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PCC는 신문사 측이 세 번째 조항을 위반했다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고 기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불만신청인의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는 곳인 집에서 이러한 사진을 은밀히 찍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사 측은 계입기를 되팔며 돈을 벌려는 불만신청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PCC는 신문사 측이 불만신청인의 사진을 기대하는 대중의 관심 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선 보도

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예를 들어 불만신청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각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며 불만신청인이 XBOX를 사게 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는 것이라는 증거 역시 충분치 않다고 PCC는 보았다. 따라서 이 때문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데 대한 불만신청인의 요청을 신문사 측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 보기 어렵고 불만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더더욱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윤리강령 세 번째 조항에 관한 불만은 인정한다고 PCC는 밝혔다. □

고 요구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보도 내용 중에 환자의 이름이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 내용의 정확도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만신청인 측은 신문사 측이 신속하고 타당한 후속 기사로 정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호주 신문평의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문사 측은 최초의 자료 제공자의 이름과 신분이 공개되면 그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내부 고발자의 신원보호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정확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사 측은 기사의 내용은 불만신청인 측을 잘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사 측은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 3면에 걸쳐 『응급구조대, 주장을 반박』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구조대장과 주무 장관이 신문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불만 신청이 제기된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3면에 걸쳐 게재한 것은 신문사 측이 불만신청인의 정당한 반론권 보장 의무를 부분적으로 이행한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호주 신문평의회는 공공

## 호주 사례 1

### 기사의 균형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기사에 대한 불만은 인정할 수 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퀸스랜드 응급구조대가 「데일리 머큐리」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일부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데일리 머큐리가 지난 2월 17일자 『앰블런스의 서투름이 목숨을 앗아가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맥케이 앰블런스 통신 센터가 2004년 2월 문을 닫고 록햄턴 지역으로 옮겨진 결과 최소 한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맥케이 앰블런스 서비스 직원의 높은 사직율과 회사 내의 괴롭힘, 협박에 관한 주장 그리고 록햄턴의 000번 발차 담당자들이 잘못된 길을 알려주었다는 주장이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호주 신문평의회에 불만신청을 냈다. 불만신청인 측은 보도 내용이 불만신청인에 대한 심각한 비난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망사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히라

기관이 관련된 사망사건에 대한 주장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증거들이 충분해야 하고 비록 불만신청인의 입장이 신문에 실리면서 독자들이 양 측의 주장을 객

관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는 했으나 문제의 첫 번째 기사 자체는 균형적이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신청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

1년 전에 게재된 기사는 웰링턴의 인도 상원위원회에서의 비자 승인 지체에 대한 불만을 다룬 기사라며 불만신청인이 두 개의 기사를 혼동한 듯 하다고 밝혔다.

신문사 측은 원래의 기사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고 편집장 또한 독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편집장은 독자들의 의견을 중요시한다고 밝히고 만약 기사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하나의 불만신청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편집장은 만약 필요하다면 추후에 발행되는 신문에 불만신청인의 편지를 담은 정정보도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의 원인이 된 기사는 올해 초 뉴질랜드 정부와 국회는 이 일에 대해 “완전한 침묵”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의 말을 명백하게 인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사 측은 외교상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정부와 정치인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하기를 꺼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보도는 행정부가 상원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기를 반대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판단하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

## 뉴질랜드 사례

### 보도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사이암 선더 아가왈이 어클랜드 지역에서 2주마다 발행되는 영문신문 「인디언 뉴스링크지」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가왈은 인디언 뉴스링크지가 지난 3월 12일 『인도 대표 파문, 소환』 제하의 기사에서 “웰링턴의 행정부는 상원 위원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확한 진술이 아니다”라며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 불만신청을 냈다.

불만신청인은 보도가 나간 이후 논란이 일자 인디언 뉴스링크지의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웰링턴 행정부는 상원 위원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해명했다. 불만신청인은 1년 전 같은 신문에서 『텔리, 상원위원을 조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를 인용하며, 전반적인 보

도를 할 때는 예전 발행물도 참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만신청인의 편지는 신문이 한번 발행될 때마다 200여 통의 편지가 오기 때문에 모두 실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게재되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편집장이 의도적으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정확도와 공정성에 대한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오보를 편집장이 정정하지 않았으며 사실과 의견 사이의 뚜렷한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의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이 참조한 두 편의 기사가 개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편집장은 문제가 제기된 기사는 인도 상원 위원이었던 하리쉬 도그라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불간섭에 관한 내용이었고